

의안 번호	3
----------	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08. 26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3호

다. 제출일자 : 2022. 08. 17.

라. 회부일자 : 2022. 08. 18.

2. 제안이유

- 심각한 저출산 현상 등 변화된 환경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, 여성복지시설 명칭 변경 및 성북 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 신설로 인한 시설 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만 18세 이하의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혜택 신설(안 제6조 제4항)
- 나. 여성복지시설 명칭 변경 및 신규시설 추가(안 별표 1)
- 다. 여성복지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수정 및 수강료 상한선 현실화 (안 별표 2)
- 라.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을 반영하여 정비 권고 용어 수정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화기본법」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
- 기 간 : 2022. 7. 7. ~ 2022. 7. 27. (20일간)
 - 의 견 : 의견 없음.
- 라.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

구분	권고안	반영 여부	미반영사유(개선안 포함)
인권 영향 평가	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‘(기존안) 사용료의 100분의 20’을 → ‘(권고안) 사용료의 100분의 50’을 감면할 수 있도록 바꾸기 바람	미반영	권고안이 반영될 경우 여성회관(개정 후 성북여성문화센터)의 추정세입이 년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<u>수강료 인상이 불가피</u> 하게 됨에 따라 기존안을 유지하되, 권고안을 존중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하고자 함

5. 검토의견

□ 개정안 개요

-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족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확장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, 성북 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 따른 이용 규정 마련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5조제2항은 조문 중 “생활문화교육”을 “문화여가 및 능력개발”로 변경한 것으로,
 - 이는 성북 여성취업교육센터 설치로 여성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, 직업상담 및 창업 지원·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6조제4항은 감면 규정으로, 현행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 하던 사용료 및 수강료(50%) 감면 혜택을 확장하여 18세 이하 2 자녀 둔 가정에도 20%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하는 것임.
 -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2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추세¹⁾를 반영한 것이며,

1) 2021년 9월,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는 정책 추진

이와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서도 18세 이하 2자녀 가정에도 주차요금의 30%를 할인하고 있음.

<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>별표1의 비고란

15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,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- **안 제7조제1항제1호**는 법제처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 중 “10%”를 “100분의 10”으로 용어를 정비한 것이며,
- 개정안 [별표 1] (제2조제1호 관련 및 [별표 2] (제5조 관련)는 여성복지시설 명칭 변경 및 신규시설을 추가하고, 프로그램 내용 및 수강료 상한선 현실화하는 것임.
 - 구체적으로는 **안 별표 1**에 ‘성북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’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명, 위치, 기능을 반영하고, 네이밍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기존 ‘성북여성회관’을 ‘성북여성문화센터’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,
 - **안 별표 2**는 수강료란 표의 **안 제5조제2항**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교육내용 추가 등에 따른 수강료 상한선을 기존 월 4만원 이하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현실화하며, 대관료란 표의 신규 시설명과 이용기준을 마련한 것임.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2022년 9월 ‘성북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’가 개관 예정임에 따라 이용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,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2자녀 가정에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.